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5
----------	-----

제 출 일 : 2025. 4. 4.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제명과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3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조례 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 21건

-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2)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 →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도로명주소 등 올바른 주소 표기 : 2건

- 1) 금곡동 615-10번지 → 홍유릉로 273
- 2)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2번지 →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2

다. 용어 등 그 밖의 정비 : 9건

-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
- 2) 용어 정비
 - 기타 → 그 밖에
- 3) 띄어쓰기 정비
 - 협력체계구축에 → 협력체계V구축에

3. 참고사항

가. 부서협의결과

- 1)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2) 성별영향평가 : 체크리스트 제출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규제심사 대상 여부 : 규제심사 대상 아님

나. 입법예고 결과

- 1) 예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9.(20일간)
- 2) 예고결과 : 의견제출 1건
 - 안 제29조(「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외
- 3) 검토결과 : 반영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관하여는“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를 “관하여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로 한다.

제2조(「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로 한다.

제3조(「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을 “「법제업무운영 규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로 한다.

제4조(「남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남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5조(「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업제안에 의하여”를 “사업제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지방보조금법 제25조”를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 3”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1호 중 “안건에 관하여”를 “안건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사정에 의하여”를 “사정으로”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을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2항”을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7조의2”를 “제37조의3”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9조(「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0조(「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11조(「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직적접인”을 “직접적인”으로 한다.

제12조(「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로 하고, “법 제2조 제10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3조(「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4조(「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남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위원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위원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전문가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문가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6조(「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를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7조(「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로 한다.

제18조(「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가없이”를 “대가 없이”로 한다.

제19조(「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

제20조(「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금곡동 615-10번지”를 “홍유릉로 273”으로 한다.

제21조(「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회계관리는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을 “회계관리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23조(「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24조(「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을 포함하여”를 “포함하여”로 한다.

제25조(「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6조(「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협력체계구축”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정 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제27조(「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2번지에”를 “2에”로 한다.

제28조(「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9조(「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0조(「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1조(「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10조제2항 중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2조(「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의회법무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의회법무과장 양 기 영
	팀장 직위·성명	의회법무팀장 김 설
	담당자 성명·전화	김 지 나 (031-590-7316)

신·구조문대비표

□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 -- 관하여는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 ----- ----- 1. ~ 3. (현행과 같음)

□ 「남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남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8. (생략) 9.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 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 항 10. (생략)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1. ~ 8. (현행과 같음) 9. ----- 따른 ----- ----- 10.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생략) 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u>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운영에</u> ----- ----- -----.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 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부 문의 <u>사업제안</u> 에 의하여 추진되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① ----- ----- --- <u>사업제안</u> 으로 -----

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 3자에 대한 제안공고 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고시 전에 각각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기타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생략)

② -----

-- 따른 -----

③ -----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

④ (현행과 같음)

□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 제6조)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지방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 ----- ----- 필요한 ----- ----- -----.</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 4. (생략) 5. 지방보조금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6. ~ 9.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 ----- 6. ~ 9. (현행과 같음)</p>
<p>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p>	<p>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 -----. 1. -----</p>

<p>러하지 아니한다.</p> <p>③ (생략)</p> <p>제23조(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u>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2항</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u>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3항</u> ---</p> <p>-----</p> <p>-----</p> <p>-----</p> <p>-----</p> <p>-----</p> <p>-----.</p>
--	--

□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안 제7조)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u>제37조의2</u>, 제60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위원의 임기) ① (생략)</p>	<p>제1조(목적) -----</p> <p>----- <u>제37조의3</u> -----</p> <p>-----</p> <p>-----</p> <p>-----</p> <p>-----</p> <p>-----</p> <p>-----</p> <p>-----</p> <p>-----.</p> <p>제3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3. 4. (생략)</p> <p>제9조(수당 등) ①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략)</p>	<p>②-----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밖의</u> ----- -----</p> <p>3.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수당 등) ① ----- ----- ----- ----- <u>따라</u>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 「남양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제3조(적용범위)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 <u>행정효율과</u>	제12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 「 <u>행정업무의</u>

<p><u>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학술연구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u>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u></p> <p>-----</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	---

□ 「남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9조)

현행	개정안
<p>제4조(적용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p> <p>2. 3. (생략)</p>	<p>제4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1.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u>」 제6조-----</p> <p>-----</p> <p>-----</p> <p>2. 3. (현행과 같음)</p>

□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남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유망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역중 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 ----- -----.</p>

□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직 접적인 ----- -----</p>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	--------------

□ 「남양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u>법 제2조 제10호</u>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p> <p>3. ~ 6. (생략)</p>	<p>제3조(용어의 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건설기술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 <u>제49조</u>----- ----- ----- <u>법 제2조제5호</u>----- ----- ----- -----.</p> <p>3. ~ 6. (현행과 같음)</p>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생략)</p> <p>⑤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p>	<p>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p>

<p>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 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 다. <항번호 변경 2013.11.14., 2 022.9.19.></p> <p>1. (생략)</p> <p>2. 삭제</p> <p>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 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 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 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 부하는 경우</p> <p>4. ~ 6. (생략)</p>	<p>----- ----- --. ----- -----</p> <p>1. (현행과 같음)</p> <p>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 ----- ----- ----- -----</p> <p>4. ~ 6. (현행과 같음)</p>
---	---

□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p>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략)</p> <p>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 -----.</p>

□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
<p>제11조(수당 등)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u>전문가에게는 「남양주시</u></p>	<p>제11조(수당 등) ----- ----- 위원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 <u>전문가에게는 「남양주시</u></p>

<p>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 ----- -----.</p>
---	--

□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p>

□ 「남양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u>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p>	<p>4. ----- ----- ----- 「<u>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2<u>조의2</u>----- -----.</p>
--	---

□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u>대가없이</u>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제3조(정의) ----- ----- ----- <u>대가 없이</u>----- ----- -----.</p> <p>1. ~ 6. (현행과 같음)</p>

□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p>

<p>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p> <p>1. ~ 4. (생략)</p> <p>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p> <p>6.·7. (생략)</p> <p>8.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p> <p>9. (생략)</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 <p>-----</p> <p>6.·7. (현행과 같음)</p> <p>8.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p> <p>9. (현행과 같음)</p>
---	---

□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위치) 보훈회관은 남양주시 금곡동 615-10번지에 둔다.	제2조(위치) ----- 홍유릉로 273-----.

□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운 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남양주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예산외 제규정을 준수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 ----- 회계관리는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 ----- ---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생략) ②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제10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총괄 ----- -----하며----- -----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⑦ (생략)	----- -----. ⑤ ~ ⑦ (현행과 같음)
--	-----------------------------------

□ 「남양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u>을 포함하여</u>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⑦ (생략)	제6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u>포함하여</u>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남양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이용·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준용규정) ----- ----- ----- ----- -----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생 략)</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 략)</p> <p>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 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u>협력체계구축</u>에 관한 사항</p> <p>6.·7. (생 략)</p> <p>③ (생 략)</p> <p>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u>확정</u> 한다.</p>	<p>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u>협력체계 구축</u> ----- -----</p> <p>6.·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확정</u>한다.</p>

□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7조)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남양주시 외국인 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화도읍 가구단지중앙길 2번지에 둔다. <전부개정 2010.11.11.></p>	<p>제2조(위치) ----- ----- ----- -- <u>2</u>에 -----. -----</p>

□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28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준용) ----- ----- -----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남양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29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 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안 제30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생략)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준용) ----- ----- -----

<p>「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 ----- -----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	--

□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p>제2조(기금의 재원) 남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3. (생략)</p> <p>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p> <p>5. ~ 7. (생략)</p>	<p>제2조(기금의 재원)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 「남양주시 소하천점용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	-----

제8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
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
환한다.

1. 2. (생략)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취소등이 된 경우
4. (생략)

제8조(점용료등의 반환)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7조-----

4.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재정수반요인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등 현행화, 도로명주소 등 올바른 주소 표기, 용어·띄어쓰기·경미한 오기 정비를 위해 조례·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의회법무과장 양기영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의회법무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5A경기남양017)

1. 의회법무과-2093(2025. 2. 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 성 아 동 과 장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홍주희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25. 2. 18.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6456	(2025. 2. 18.)	접수	의회법무과-2126	(2025. 2. 18.)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여성아동과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의회법무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5-19,20)

의회법무과-2084(2025.2.18.)호와 관련하여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및 규칙(일괄)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 가 결 과 : **원안동의**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김주현	청렴윤리팀장	이정주	감사관	2025. 2. 19.	문경석
협조자						
시행	감사관-1936	(2025. 2. 19.)		접수	의회법무과-2153	(2025. 2. 19.)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2079	/	sjh99006@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5-남양주-19		
자 치 법 규 명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33개 조례)		
평 가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주현
입 안 부 서	의회법무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지나
평 가 결 과 통 지 과 일	2025. 2. 19.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5년 2월 19일</p> <p>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p> <p>(담당자 / 연락처 : 김주현 / 031-590-4719)</p>			
<p>의회법무과장 귀하</p>			

붙임4 규제심사 대상 여부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보고「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법령 불부합 우리 시 자치법규 38건

1.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심사요청) 및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의거, 자치법규(훈령·예규 포함)의 제·개정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2. 의회법무과 의회법무팀 주관 우리 시 자치법규 체계 전수조사 시행에 따라 발굴된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조례 33건, 규칙 5건의 상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상위 법령 또는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현행화 및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자구 정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3.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붙임 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안 1부.
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규칙 일괄개정안 1부. 끝.

주무관

조현기

규제개혁팀장

안재현

의회법무과장

전결 2025. 2. 19.

양기영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2134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붙임5 입법예고 결과보고

등록번호	의회법무과-3568	주무관	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과장	기획조정실장
등록일자	2025. 3. 20.				전결 2025. 3. 20.
결재일자	2025. 3. 20.	김지나	김설	양기영	구형서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입법예고 결과보고[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외 1]

-
- 안 건 명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 2025. 2. 27. ~ 2025. 3. 19. (20일간)
 - 예고결과 : 조례안 의견제출 1건 / 규칙안 의견없음
-

의회법무과
(의회법무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및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결과보고

1 입법예고 결과

○ 안 건 명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등 조례 33건 개정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규칙 5건 개정

○ 내 용 : 자치법규의 상위법 불부합 사항 해소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예고기간 : 2025. 2. 27.(목) ~ 2025. 3. 19.(수) /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고결과 : 조례안 의견제출 1건 / 규칙안 의견없음

2 의견제출 내용

○ 제출부서 : 문화관광과

○ 제출내용 : 일괄개정조례안 중 제29조 제외 요청

조례안	개정내용
제29조(「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 제22조 본문 ■ 「남양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남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당초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괄 개정조례안에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 외에도 정약용 유적지 운영사항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발견하여 일괄개정조례안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3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반영

-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하여 5월 중 공포 예정인바, 문화관광과에서는 「남양주시 정약용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2회 임시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잦은 개정을 지양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조례안에서는 동 조례를 제외하고자 함
- 일괄개정조례안에서 제외한 내용은 추후 문화관광과에서 개정안 발의 시 포함되도록 하여 법령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4 향후계획

- 2025. 3. 2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5. 4. 3. : 현안사항 보고
- 2025. 4. 14. ~ 4. 23. :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출
- 2025. 5. : 공포